

글로벌기술사업화지원 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조 (명칭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글로벌기술사업화지원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 2조 (목적)** 본 연구소는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·중견기업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해당기업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실용적 지원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영 및 기술사업화 분야의 국내외 최고 센터로 발돋움하여 호서대학교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위치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안에 둔다.
- 제 4조 (사업내용)** 본 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 타당성 분석
 2. 특허, 기술 확보 및 판매 지원
 3. 글로벌 기술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
 4. 전략 제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

제 2 장 조 직

- 제 5조 (구성)** ① 본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소장
 2. 감사
 3. 운영위원회
- 제 6조 (소장)**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.
-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- 제 7조 (감사)** ①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매년 3월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1. 연구소의 당해 연도 예·결산
 2. 연구소 당해 연도 사업의 타당성
 3.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- 제 8조 (운영위원회)**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. 소장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 소속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- 제 9조 (회의)**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 - 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
 - 2. 예산 및 결산
 - 3. 규정 개정 발의
 - 4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④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참석한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0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
- 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- 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- 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
제11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 5 장 폐 소

제12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제 6 장 보 고

제13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- 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- 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- 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- 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 7 장 보 칙

제14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9.05.14)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